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 3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주배경학생’ 용어 사용 등〉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05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이주배경학생’ 용어 사용 및 밀집 현상 완화	3
※ 참고자료	
1. 이주배경학생의 유형 및 특성	10
2.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5. 13.

다. 회 부 일 : 2025.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Ⅲ. 검토의견

1. ‘이주배경학생’ 용어 사용 및 밀집 현상 완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기존의 ‘다문화학생’ 대신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이 일부 학교에 밀집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 ----- ----- <u>이주배경학생등</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u>이주배경학생등</u> ----- ----- ----- -----.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④ ----- <u>이주배경학생등</u> ----- -----

현행	개정안
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u>다문화학생</u>들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 ⑤ -----<u>이주배경</u> <u>학생</u>----- -----.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들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입법례에서는 ‘다문화’와 ‘이주배경’이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다문화’는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국한되는 등 상대적으로 협소한 개념인 반면, ‘이주배경’은 다문화의 범위에 더하여 혼인의 형태나 국적 등을 따지지 않고 국내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그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보임.

< ‘다문화’ 및 ‘이주배경’ 입법례 >

<‘다문화’ 입법례>	<‘이주배경’ 입법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다문화가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u>국적법</u>」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u>국적법</u>」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u>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u>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u>

□ 한편,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4년 67,806명(전체 학생의 1.07%)에서 2024년 181,178명(3.72%)으로 10년 동안 2.67배 가량 증가했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¹⁾는 2024년 100개교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 연도별 이주배경학생 현황 >

(단위: 명)

연도	전체	내국인		외국인
		국내출생	중도입국	
2024년	181,178	129,910 (71.7%)	10,896 (6.0%)	40,372 (22.3%)
2023년	181,178	129,910 (71.7%)	10,896 (6.0%)	40,372 (22.3%)
2022년	168,645	126,029 (74.7%)	9,938 (5.9%)	32,678 (19.4%)
(중 략)				
2014년	67,806	57,498 (84.8%)	5,602 (8.3%)	4,706 (6.9%)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1)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관계부처 합동,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2025.2.)

< 연도별 밀집학교 현황 >

(단위: 개교, 24.4.1.기준)

연도	90% 이상	70% 이상 90% 미만	50% 이상 70% 미만	30% 이상 50% 미만	합계
'24년	4(2)	14	18	64(1)	100
'23년	4(2)	9	16	61(1)	90
'22년	3(2)	6(1)	9	55	73
'21년	2(1)	6(1)	7	42	57
'20년	3(2)	5	6	33	47

※ 초·중·고·(각종학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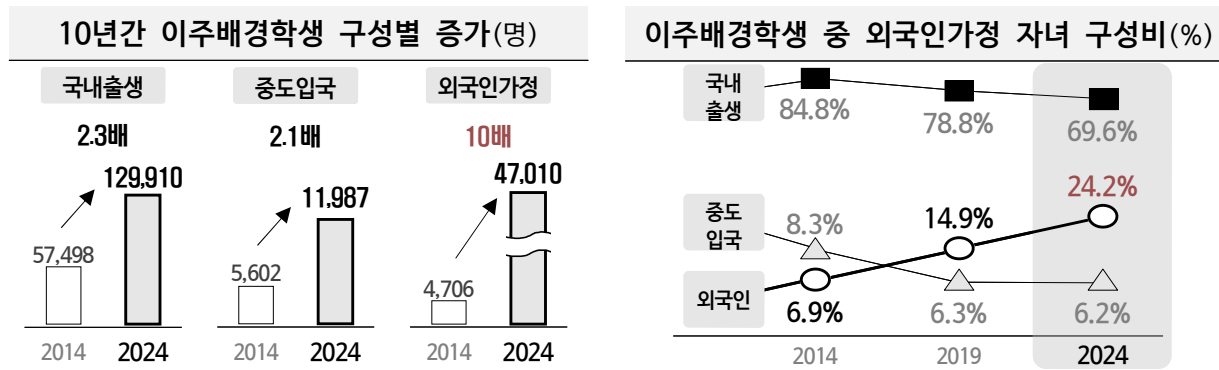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외국인가정, 중도입국학생과 같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교과수업,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²⁾.

-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학생’ 대신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를 해소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와 같은 특정 집단을 지칭하고 있으나, 외국인가정의 학생 수가 10년 전 대비 10배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가정의 구성비 또한 약 25% 수준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등 이주배경학생 집단의 구성이 다양화되었으므로, ‘이주배경학생’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한국교육개발원,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이주배경학생 구성 현황>



자료: 교육부

-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는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바³⁾, 이미 다문화학생보다 범위가 넓은 이주배경학생을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 2023년 6월 20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주민’ 용어 사용을 제안⁴⁾한 이래로 각 부처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도입국학생이나 외국인학생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되는 추세 역시 개정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4) 국민통합위원회, 보도자료 「국민통합위,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 개최」

□ 한편, 안 제28조의2제6항의 지원 주체로 교육감을 설정한 것과 관련, 2024년 밀집학교 100개교 중 88개교가 7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밀집도의 시·도별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책 수립·시행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설정한 것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시·도별 밀집학교 현황 >

(단위: 개교)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밀집학교 수	100	17	3	6	5	2	1	0	0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밀집학교 수	40	0	6	8	1	1	6	4	0

자료: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 다만, 안 제6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은 제1항 개정 시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육부는 지역 생산인구 감소 및 산업수요 등에 따라 이주배경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단배후지 등을 중심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학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감이 이들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이주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이주배경학생” 용어 사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주배경학생의 유형이 결혼 이주민 가정의 자녀 중심에서 중도입국학생, 외국인가정 학생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양화 되고 있는 정책 대상을 포괄할 수 있다면서 이견이 없음을 밝힘.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1

이주배경학생의 유형 및 특성⁵⁾

구분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국내출생	중도입국(해외출생후)		중도입국	국내출생
배경	부모	한국인-외국인	한국인-외국인	한국인-외국인(재혼**)	외국인-외국인	
	출생	한국	외국		외국	한국
국적		내국인	내국인 (결혼이후생)	외국인 (결혼이전생)	외국인	외국인
한국어 역량		○ (대체로 높음)	△ / X (입국시점 따라 다름)	X (대체로 낮음)	X (대체로 낮음)	△ (한국어역량 보유 경우 有)
체류 자격		■ 내국인으로서 체류에 문제없음		■ 방문동거 비자(F-1) ■ 입양 시 국적 취득 ■ 체류비자 다양*** ■ 비자별 체류·취업 큰 차이 ■ 고교까지 체류가능(체류자격 무관) ■ 졸업 후 유학, 취업비자가 있어야 체류가능		
특성		■ 한국인 정체성 높음 ■ 통합교육 선호 ■ 일부 다문화가정임을 노출하기 꺼리는 경향	■ 생활 만족도 낮은 편 ■ 새로운 가족, 문화 등으로 스트레스 높음, 차별경험 높음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특성 ■ 불법체류 등 정주여건이 불안정한 경우 있음	

* 재외동포(중국 동포, 고려인) 난민 포함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 후 본국에서 기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 (예) 영주(F-5), 재외동포(F-4), 동반(F-3), 방문취업(H-2) 등 / 일부는 난민, 불법체류

※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모두 한국에 계속 머물며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는 비중이 높음**

△ 중도입국 [한국정주(63%), 국적취득 의사(57.4%)] △외국인 [한국정주(국내출생 67.5%, 해외출생 57.9%), 국적취득 의사(국내출생 46.8%, 해외출생 32.4%)]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5)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참 고 2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⁶⁾

□ 특정 학교 밀집 현상 완화

- (밀집도 완화)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방향 밀집현상 완화 방향

- ① 신규 전·입학 학생 중심으로 인근 학교에 균형 배치(중도입국학생 배치시 저밀집학교 우선 배치)
- ② 타학교(국제·대안학교, 기숙학교 등)로 자율적인 전·입학을 유도

- (법적 근거) 시도교육청에서 필요시 지역 여건에 맞춰 특정학교의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력·재정 집중 투입

- (교원 배치) 일반학교에 비해 수업·생활지도 부담이 큰 밀집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원 추가 배치
- (지원인력) 교육청별 재정 범위에서 한국어·이중언어강사 등 채용을 확대하며, 대학의 우수한 유학생을 멘토 등 지원인력으로 활용 지원
- (AIDT 등 활용) AIDT 다국어 번역, AI기반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별 학생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현
* 모두의 한국어 : 한국어 진단 및 AI기반 맞춤형 한국어학습 콘텐츠 제공
- (지역사회 자원·재정) 밀집학교 중심으로 정책학교를 지정하여 재정 및 인프라를 투입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교육 모델 육성

- (특례부여) 교육국제화특구·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혁신 모델 운영 지원
- (학교 특화운영)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학교 설립 지원

6) 자료: 관계부처 합동,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